

의안번호	제319호
의결연월일	2021. 3. 17.

-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3. 9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과장 : 구 본 학)

### 가. 제안이유

-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경로당 회장(읍·면 분회장 및 노인회장)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(제정목적)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 등 목적을 규정 (안 제1조)
- (지원내용) 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 (안 제3조)

- (대상사업) 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(안 제4조)
- (활동비지원) 읍·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 규정 마련 (안 제5조)
- (공유재산 무상대부)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규정 마련 (안 제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경로당 회장(읍·면 분회장 및 노인회장)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국 12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(공주시, 부여군, 홍성군 포함)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며,
- 조례의 내용이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 6. 심사 결과

○ 원안가결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